

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변경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1 . 24 . 평창군수 (재무과장)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1 . 25 .

다. 상정일자 : 1998.11.25 제62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제1차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「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1차변경계획안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「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1차변경계획안」 취득재산은 토지취득 1건 5,775㎡로서 취득목적은 미탄공도장 부지임

4. 검 토 내 용

가. 관계법규 측면에서 살펴보면

-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,

-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대로 규정되어 있음
- 나. 1998년도 11. 4. 제61회 평창군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 4건 31,698㎡이고 처분은 건물 2동, 토지 122.2㎡이며,
- 다. 금회 1차변동은 미탄궁도장 부지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2필지 5,775㎡임.